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776

발의연월일: 2022. 8. 4.

발 의 자:양향자·조명희·임병헌

이인선 · 최연숙 · 서정숙

이태규 · 송석준 · 김예지

서병수 · 양금희 · 전주혜

김영식 • 윤주경 • 성일종

권성동 • 박정하 • 김기현

정성호 · 조은희 · 정우택

박 정・김주영・최승재

주호영 · 김경만 · 박형수

정운천 · 최형두 · 이종배

의원(30인)

제안이유

반도체 협력 또는 경쟁 국가로서의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 인 인재양성 정책을 지원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에 약 68조원(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 2025'를 발표하면서 약 20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하고 반도체 기업에게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며, 대만도

매년 1만여명 규모의 신규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사 정원의 10 퍼센트와 석·박사 정원의 15퍼센트를 확대하는 등 반도체 관련 주요 국들은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경제 안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

2022년 8월 4일에 시행되는 현행법은 경쟁국들의 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관련 산업계 등에서 보완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반도체 계약학과 등에 관련 기업이 지출한 운영비의 세액공제,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시 시가의 공제혜택 부여, 외국 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 액공제율 인상을 규정하는 등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맞춤형 인 재 양성 및 고급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 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 자산 시 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안 제8조의3제4항 신설).
- 나.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내국인이 교육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개설하는 학과 및 학부 등(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전단).

- 다. 우수한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기간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확대함(안 제18조제1항).
- 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시설에 대해 203 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20, 중견기업은 100분의의 25, 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직전 3년간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함(안 제24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기증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동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의 가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하"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 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이 같은 법 제36조에 따 른 계약학과등의 운영비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 1일"로, "100분의 6"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8"을 "100분의 25" 로, "100분의 16"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10 0분의 4"를 "100분의 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학과등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연구·인력개발비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학과등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 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했 개 정 안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2025년 12 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 는 경우에는 기증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 당하는 금액을 기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동항의 규정을 적용 할 때 해당 자산의 가액 등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 ④ ~ ⑦ (현행과 같음) 까지와 같음) 제10조(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 ① -----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법인세에서 공제한다.이 경우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하나만을 적용한다.

1. ~ 3. (생략)

② ~ ⑥ (생 략)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 제 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
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을 경영하는 기업이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운영비로 지출한 비용을 포함
한다. 이하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
득세의 감면) ①

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 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 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 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 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 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 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 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 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u>10년</u>
-,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생략)
-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u>.</u>
1. (현행과 같음)
2
가

다.

- 1) (생략)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 (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 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 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 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	
	1) (현행괴	- 같음)	
	2)		
		-2030년	12월
	<u> 31일</u>		
	-100분의	20	
	-100분의	<u>25</u>	
	<u>100분</u> 의	30	
Ľ	ł		
		<u>100분의</u>	5
			<u>_</u>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